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914
----------	-----

제출년월일 : 2009. 1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개정이유

-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촉진 지원과 지역주민에게 타시도와 동일한 채권면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소급 감면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시 2009. 10. 1. ~ 2012. 12. 31.까지 150만원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 면제항목 신설(안 별표 2 제2호자목)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1부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인천광역시”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기금”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시”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중 “「인천광역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다”를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09. 10. 1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지역개발채권매입면제대상 (제10조 관련)

구분	매입면제대상과 내용	비고
1. 매입면제 기관	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과 외국정부 기관 라. 주한 국제 기구와 원조 단체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시설 바. 민·상법외의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사. 「정당법」에 따른 정당 아.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	
2. 매입면제 대상	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 이전 등록 나.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 당시의 소유자가 회수하여 신규 등록 하는 경우의 자동차 신규등록 다. 법인 합병시의 자동차 이전등록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1대의 차량등록(장애인 1인1대에 한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관정을 받은 자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마. 각종 허가증 ○ 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점용·사용허가 ○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농어가 주택건설과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다만, 농업인·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가 정한 바에 따른다. 바. 일반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 사.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 아. 개별 법령 및 조례의 위탁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무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15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 면제	“자”목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u>의 주민복지증진 또는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u>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u>인천광역시</u> ----- ----- ----- <u>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u>----- ----- ----- -----</p>
<p>제2조(특별회계의 설치)① <u>기금</u>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u>시에</u>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p>	<p>제2조(특별회계의 설치)① <u>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u>- -----<u>인천광역시</u>- (이하“시”라한다)----- -----</p>
<p>제4조(기금의 조성) (생략) 1. ~ 4. (생략) 5. <u>기타</u>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p>	<p>제4조(기금의 조성)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에</u> -----</p>
<p>제7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u>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회계규칙</u>」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다.</p>	<p>제7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 ----- ----- <u>「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2조 제1항제4호</u>-----</p>

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련법령	<p>□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및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5. "하이브리드자동차"라 함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p> <p>□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지방채)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입을 얻은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상적인 운전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회전기금의 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건설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자금으로 필요한 때 <p>②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p> <p>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조례가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p>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없음”
관련자료	“해당없음”